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8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

도시가스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,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함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도시가스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,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 근거를 마련하며,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함(안 제20조의3).
- 나.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(제20조의4 신설).
- 다. 요금경감 신청을 위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(제48조제3항제2호).
- 라. 하위법령의 개정 등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

시행일을 ‘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’에서 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조정함(안 부칙).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의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
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제3항 중 “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
2.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

설한 자

안 부칙 중 “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”을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3(도시가스</u> <u>요금의 감면) 일반</u> <u>도시가스사업자는</u> <u>제20조제2항에 따</u> <u>른 공급규정에 기</u> <u>초요금수급자, 차</u> <u>상위계층, 기초생</u> <u>활수급자, 장애인,</u> <u>국가유공자 등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계층에 대한 요금</u> <u>감면 서비스를 포</u> <u>합하여야 한다. 이</u> <u>경우 가스도매업</u> <u>자, 시·도지사 또</u> <u>는 시장·군수·구</u> <u>청장은 요금감면</u> <u>서비스의 대상자가</u> <u>누락되지 아니하도</u> <u>록 하기 위하여 대</u> <u>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바에 따라 요금감</u> <u>면 서비스의 제공</u>	<u>제20조의3(도시가스</u> <u>요금의 경감) ①</u> <u>가스도매사업자 또</u> <u>는 일반도시가스사</u> <u>업자는 빈곤층 등</u> <u>모든 국민에게 에</u> <u>너지가 보편적으로</u> <u>공급될 수 있도록</u> <u>도시가스요금 경감</u> <u>등 필요한 지원을</u> <u>할 수 있다.</u>

을 직권으로 신청
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가스도매사업자,
시·도지사 또는 시
장·군수·구청장은
제1항에 따른 도시
가스요금 경감 등
지원이 누락되지
아니하도록 지원
대상자를 대신하여
도시가스요금 경감
등 지원을 신청할
수 있다. 이 경우
지원 대상자의 동
의를 구하여야 하
며 지원 대상자의
동의를 지원 대상
자의 신청으로 볼
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
지원 대상자의 범
위, 지원의 내용,
방법 등에 관한 구
체적인 사항은 산
업통상자원부령으
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0조의4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 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

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

		<u>용하거나 다른 사 람 또는 기관에 제 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 는 정보에 대하여 는 수수료 및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. ⑤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 보의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8조(벌칙) ① · ② (생 략)	제48조(벌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제48조(벌칙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<u>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 급을 방해한 자</u>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	③ (현행과 같음)	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1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박지혜 · 김영진
허종식 · 김동아 · 김교홍
이재관 · 정준호 · 오세희
허성무 · 김정호 · 장철민
정진욱 · 김한규 · 곽상언
권향엽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,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.

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3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도시가스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, 가스
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
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
근거 등을 추가함.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의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4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

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제3항 중 “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

2.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경감)</u> ① <u>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② <u>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.</u> ③ <u>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, 지원의 내용,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4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가스도매사업자,</u>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가스도매사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

제48조(벌칙) ① · ② (생략)

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설>

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(벌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---

-----.

1.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

<u><신 설></u>	<u>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</u>
	<u>2.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</u>
④ ~ ⑬ (생 략)	④ ~ ⑬ (현행과 같음)

